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본 모집요강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확정본은 원서접수 이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1
II. 지원자격	2
III. 제출서류	5
IV.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7
V. 전형료	8
VI. 수험생 유의사항	8



양식안내

양식1.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10
양식2.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학력조회 동의서	15
양식3.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16
양식4.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17

I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1. 모집인원

계 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원제한(정원내 2%) 지원자격 ①~⑤ 해당자	인원비제한 지원자격 ⑥~⑧ 해당자
자연과학	간호학과	7명	00명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스포츠의학과		
인문사회	보건복지행정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데이터경영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규정에 따라 간호학과는 최대 4명 선발 가능

※ 2020학년도 편제 및 정원조정에 따라 모집단위, 학과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입학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9.7.1.(월) 09:00 ~ 7.10.(수) 17:00 까지	인터넷 접수만 실시 (추후안내)
서류제출	2019.7.1.(월) ~ 7.11.(목)	· 우편/방문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제출 시 마감일 17:00 까지 · 보내실 곳: (우)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처
구술면접	2019.8.1.(목)	입학처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9.8.21.(수)	
합격자 등록 (예치금납부)	2019.12.11.(수) ~ 12.13.(금)	
추가합격자 발표	2019.12.14.(토) ~ 12.19.(목) 21:00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19.12.20.(금)까지	
등록금 납부	2020.2.5.(수) ~ 2.7.(금)	

※ 면접일정, 합격자 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 7.6.(토) ~ 7.7.(일)은 서류 방문제출 불가

II 지원자격

1. 지원자격

분류 번호	지원자격	자격요건	외국학교 최소 재학기간	공통 학력요건
①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절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	
⑥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및 학생 모두가 학생의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복수국적자 제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국내 또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⑧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해외근무, 거주(영주), 실체류기간 기준

지원자격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기타 재외국민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년	2년	2년	-	-	-	-	-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3. 공통 학력요건

- 가.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나. 외국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수학한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4. 외국학교 인정 기준

- 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학교
-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의 학교
- 다.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단, 지원자격 ⑦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라.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마.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가.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나.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 학교 과정에 재학하여야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
-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라.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마. 외국 근무가 종료된 후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해야 함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단, 해당국 및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 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사.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 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아.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자.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함

차. 조기졸업, 월반, 중복학기, 외국의 학제 차이 등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6. 지원자격의 완화

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7. 자격기간 계산 기준

구 분	산정기준
영주기간	- 영주권을 최초 발급 받은 날부터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근무기간	- 인사발령(외국 근무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의 해외근무 시작 월부터 해외근무 종료 월까지의 기간
재학기간	-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월단위 계산)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8. 자격인정 기준 시점

가.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0년 2월 29일을 자격인정 기준 시점으로 함(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III 제출서류

1. 분류번호: ①~⑤

지원자격	제출서류
① 영주교포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
②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상사직원의 자녀에 한함) •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 자영업자에 한함)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에 한함)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또는 제적 등본 • 파송선교사확인서(해당종교단체장 발급)(해외 선교활동자의 자녀에 한함) • 재학사실증명서(보호자)(재학기간 및 이수과정 표기)(유학생 및 외국유학연수자의 자녀에 한함)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
④ 기타 재외국민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적상실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제적 등본) •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7쪽 참조)

※ (양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부모 사망 또는 이혼 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원자격	제출서류
⑥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전 가족 호적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
⑧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전 가족 호적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7쪽 참조)

※ (양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부모 사망 또는 이혼 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호구부 및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서류의 제출 시에는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글 또는 영문번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국외기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 공증기관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마. 일정 기간 재학하였으나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성적증명서에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재학사실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사. 최종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아.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해야 함

자.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함

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공문서
- 사립학교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학교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사무소, 위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음)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www.hcch.net 참조 (관련 문의 ☎ : 02-2100-7600, 외교부)

IV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1.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과대학	모집단위			선발모형
	서류평가	구술면접	총 점	
간호학과	30	70	100	일괄합산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보건복지행정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스포츠의학과				
데이터경영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 서류평가, 구술면접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본교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음

2. 구술면접

면접 활용 자료	평가기준	면접방법
• 입학원서 • 자기소개서	• 전공에 대한 적성 • 가치관 • 논리적 사고와 이해 • 표현력 • 태도와 예절	• 구술면접

3. 동점자 처리방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사정 원칙에 따라 모집인원 내로 선발

가. 구술면접점수 우수자

나. 서류평가점수 우수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V 전형료

1.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수수료	합 계
	서류평가	면접평가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95,000원		5,000원	100,000원

2. 전형료 환불

가. 전형료 전액 환불

- 1)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한 지원자

나. 전형료 비례 환불

- 1) 고등교육법 제 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0.4.30.(목)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가)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나)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4)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면접 응시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번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전형료 환불 대상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함

※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유의해야 함

3.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가. 합격자가 등록을 마친 후 등록(등록예치금 납부자 포함)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입학처로 환불 신청을 해야 함

나.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음

다. 등록포기 및 환불처리 절차: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ha.ac.kr>) →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VI 수험생 유의사항

1. 수시모집 대학지원 횟수 제한

가.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은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

나.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다. 지원자가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 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2. 원서접수 유의사항

- 가. 지원학과는 한 개의 학과를 선택해야 함(복수지원 불가)
- 나. 기재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 바람
- 다.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연락 두절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라.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마. 결제 도중 창이 닫히거나 시스템 종료 등으로 인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바. 전형료 결제(입금)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임
- 사.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3.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수험생은 구술면접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지참할 수 없음(수험표는 본교에서 제공)
 - 나. 합격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다. 신입생은 본교가 정한 특별한 경우(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 라.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마.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본교의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절차(입학처 문의)를 밟아야 함
 - 바.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음
 - 사.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본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 됨

4. 합격취소

- :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학이 취소됨
- 가. 제출한 서류 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나. 합격 후라도 지원 자격 미달로 밝혀진 경우
 - 다. 입학시험 부정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 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5.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 사전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 분	2020학년도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대학 자율 설정	➡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양식1.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학과)		생년월일					
지원자격 (해당하는 칸에 O 표시)	①영주교포자녀						
	②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③유치과학자, 교수요원의 자녀						
	④기타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자		기타	
	⑤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⑥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⑦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⑧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재외국민	기간	학교명 또는 기관명	소재지
	. . ~ . .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	
	. . ~ . .		

※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재까지의 학력을 가급적 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기입하시오
 ※ 자기소개서는 총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오(첨부자료 목록 제외)

성장 과정 및 가족 관계

성격, 장·단점 및 특기

중·고교에서의 학업성취 및 기타 활동

차 의과학대학교 ***학과 지원동기**

대학에서의 학업 계획과 장래 희망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목록

※ 자기소개서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하여 별도로 첨부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시오
 ※ 자료 첨부 순으로 작성하시오

번호	첨부자료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별 필수 제출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시오
 ※ 서류 첨부 순으로 작성하시오

번호	첨부자료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양식2.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학력조회 동의서



CHA UNIVERSITY
차 의과학대학교

120, Haeryong-ro, Pocheon-si, Gyeonggi-do, Korea

PHONE | +82-31-850-9021~6 9058~9 FAX | +82-31-542-0116

Date :

Request for Attendance Records Verific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school's assistance with our admission process.

Specifically, we need you to validate the attendance records submitted by the students who have claimed to previously attend your school and are applying for admission to CHA University. We realize that it is a cumbersome task and one you are not obligated to carry out, but it is imperative that we have accurate academic records of every applicant for a fair evaluation and we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help with the matter. All you need to do is check the records of the students in the attached list, mark the enclosed sheet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and fax the completed form back to us.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Sincerely yours,

Dean of Admissions Office
CHA University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attended * _____ from * _____ to * _____ .
(school name) (date) (date)

I hereby acknowledge that I have applied to CHA University for admission in the 2020 academic year and I give my full consent so that CHA University can request my attendance records from the schools I have previously attended.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 to provide CHA University with their request for verification of my attendance records.

* Written by Applicant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Date of Birth : * _____ (Month) (Day) (Year)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_____ (Month) (Day) (Year)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_____ (Month) (Day) (Year)	☐ Correct ☐ Incorrect
* _____ Name Signature Date : * _____ (Month) (Day) (Year)	Additional comments : Signature _____

※ 지원자는 *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 본 양식을 재학한 해외학교 수만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3.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차 의과학대학교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성명				수험번호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격구분	☐ ①영주교포자녀 ☐ ②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 ③유치과학자, 교수요원의 자녀 ☐ ④기타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 자영업자 ☐ 기타) ☐ ⑤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⑥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⑦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⑧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교명	학기제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 2	☐ 3	☐ 4	~	년 개월																											
고등학교까지의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교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구분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특이사항
	기간	거주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모(母) 성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 작성자 : (인) (반드시 날인 요망) 지원자와의 관계 :

양식4.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차 의과학대학교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성명		수험번호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격 구분	☐ ①영주교포자녀 ☐ ②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 ③유치과학자, 교수요원의 자녀 ☐ ④기타재외국민 자녀 (☐ 현지법인 ☐ 자영업자 ☐ 기타) ☐ ⑤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⑥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⑦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⑧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교명	국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FAX	비고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를 교육과정 기록표에 기재한 순서대로 기재
 ※ 학교명 및 주소는 한글/영문으로 정확히 기재
 ※ 전화번호 및 Fax 번호는 국가코드, 지역코드를 포함하여 기재